#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7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서지영·박덕흠·박충권

송석준 • 이종배 • 박성훈

조경태 · 성일종 · 인요한

김용태 · 서일준 · 이인선

이헌승 · 김승수 · 서천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내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보호자는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4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하 "위기학생"이라 한다)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⑦ 교육감은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4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지적"을 "정서·행동문제 및 지적"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기학생의 보호자로서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치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br>①·② (생 략)<br><u>&lt;신 설&gt;</u>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내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       |
| <u>&lt;신 설&gt;</u>                                    | 에게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 (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수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
| <u>&lt;신 설&gt;</u>                                    | 수 있다. ⑤ 보호자는 제3항에 따른 상 당 및 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
| <u>&lt;신 설&gt;</u>                                    |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4항에 따른 치료   |

<신 설>

<신 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 • 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 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학생(이하 "위기학생"이라 한다)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4항에 따른 치료 권고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시·도 교육행정기 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하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 ② (생략)

-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1. 성격장애나 <u>지적(知的)</u>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2. · 3. (생략)

② ~ ⑩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 둘 |
|--------------------------------------|---|
| <u>수 있다.</u>                         |   |
| ② (현행과 같음)                           |   |
|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 학 |
| 생에 대한 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u>정서·행동</u> 된                     |   |
| <u>및 지적</u>                          |   |
|                                      |   |
|                                      |   |
|                                      |   |
|                                      |   |
|                                      |   |
|                                      |   |
|                                      |   |
| <br>2.·3. (현행과 같음)                   |   |
| <br>2.·3. (현행과 같음)<br>② ~ ⑩ (현행과 같음) |   |
|                                      |   |
| ② ~ ⑩ (현행과 같음)                       |   |

| 부과한다.              | <u>.</u>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위기학생의 보호자로서 제18     |
|                    | 조의4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
|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치료의       |
|                    |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
|                    | 행하지 아니한 자              |
| <u>3.</u> (생 략)    |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